제149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22. 3.31(목) 10:30

□ **장 소** : 달개비(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옆)

□ **참석자** : 이사 11명, 감사 1명

◦ 이 사 :

◦ 감 사 :

□ **주요내용**

[안건 심의]

◦ [제1안건] 정관 일부개정(안) : 원안의결

[기타사항]

◦ ' 이사'를 '이사장'으로 호선함.

□ 회의록 내용

○ **연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 감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성원 보고에 앞서 연구원 임원소개와 연구원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자로 선임직 이사 여섯 분과 노동이사 한 분이 임명되셨습니다. 신임 이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신임이사 및 기존이사 소개]**

○ **연구기획조정실장:** 오늘 서울시 이사님과 이사님은 시의회 상임위의 갑작스러운 회의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하여 서울시 과장님과 담당관께서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총장님은 출장 일정으로 시립대 기획처장님께서 대리참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임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원장님께서 연구원 주요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연구원 주요현황 보고]**

○ **연구기획조정실장:** 오늘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 이사 12명 중 11명이 참석하셔서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이사회를 주재해 주실 이사장님이 현재 공석입니다. 연구원 정관 제16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호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이사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사장 호선 후에는 이사장님께서 이사회를 주재하시겠습니다.

○ **[이사장 호선]** ‘ 이사’를 이사장으로 호선

○ **연구기획조정실장:** 이사님께서 이사장에 호선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이사회를 개회해 주시겠습니다.

○ : 제가 역량이 부족하고 시장님께서 서울연구원에 대한 기대도 크시고 원장님께서도 의욕적으로 호평해 주셔서 부담됩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여러 이사님 들을 저도 잘 보좌해서 이사장직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제가 수행에 부족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이사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정관 일부개정(안)' 1건입니다.

○ : 심의안건 **'**정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연구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 : 방금 설명하신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이사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임 이사님들께서 연구원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매번 이렇게 바꿔야 하는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이 서울시에서 연구원을 설립 당시 자본금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매년 그때그때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적립을 합니다. 정관에 기본재산 내용을 보시면 연구원 설립 당시 출연금이 50만 원이었고, 3억 원은 추가 출연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연구원이 30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발생하는 잉여금들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쌓이는 부분입니다. 작년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하였습니다. 정관에 기본재산목록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바뀌면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 : 민간기업이나 민간재단과 달리 특이한 사항인데

서울연구원만 이런 것인가요?

○ :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들은 모두 정관에 기본재산을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번거롭지만 매번 정관 개정을 해야 합니다.

○ : 잉여금은 원래 기본재산에 반입하게 되어있습니까?

○ : 과거에는 정관에 '기본재산을 적립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었는데, 기본재산의 액수를 명시하라는 것은 최근부터입니다. 예산은 서울시 출연금이 있고, 수탁과제 수입이 있는데 출연금에서 남는 돈은 기본재산에 적립하지 않고 차기 예산에 이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탁사업 등 저희들의 노력에 의하여 늘어나는 수익사업에서 남는 예산은 시에서 인정할 경우,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기본재산을 적립하지 못합니다.

○ :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특수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재산을 어느 정도의 목표액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에 대해서는 고정시키고 이자수익금에 대한 기본적인 금액은 건드리지 않는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변동이 되면 기본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없어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재산은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모두 이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되면 매년 기본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요?

○ :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 예산이 꽤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저희는 연간 예산이 약 400억 원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이 50억 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규모로서 사실상 재단법인이라기보다는 서울시의 출연금 위주로 운영되는 형태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유지해 왔기 때문에

기본재산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구원에 예산적으로 큰 변화를 준다든지 제약을 한다든지 하는 상황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상황이 어떨 때는 자산에서 충당은 가능한데 잉여금이 남으면 반드시 기본재산으로 넣어야 합니까?

○ : 저희 예산상에 미리 되어있거나 준칙 등에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고 갑자기 다른 사업을 벌인다든지 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다음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기본재산으로 넣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 : 그 부분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재산에 넣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정충당금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하는 건데 은행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이사님들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 기본재산은 사실 유지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단법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재산을 쌓아두기만 하고 활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쌓아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쌓아두는 것은 사실 쓰려고 쌓아두는 건데 쌓아놓기만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기관에서는 적절하게 판단하여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작년 12월에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우선 연구원의 기본재산 사용으로 서울연구원의 재정 손실을 대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으니, 시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서 보존해 주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재산의 침해를 떠나서 시의 재정 결정 즉, 출연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시기가 하순이다 보니 출연금과 연동이 되었고, 출연금을 조금 늘려서 연구원의 기본재산 침해를 막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 노동이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 원장님, 이번 기회에 서울연구원 기본재산에 대한 목표액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얼마가 될 때까지는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또 하나는 잉여금 중 일부를 넣었다 다시 빼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잉여금 일부를 기본재산에 넣지 않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까요?

○ : 이사님들의 뜻을 받들어 연구원 30주년 큰 그림을 그릴 때 재원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 : 네. 감사합니다.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정관 일부개정(안)'을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상으로 연구원 제149회 임시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이사님, 감사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원 관계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